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별 정 직 공 무 원 인 사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 각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이동 및 근무상한연령 적용 배제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상 경력계산 기준일 및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 등을 준용 조항에 추가하여 현행 별정직공무원 채용제도의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직위이동 협의 폐지(안 제3조의4제1항)

기관 내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나. 근무상한연령 배제 협의 폐지(안 제6조제2항)

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

다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준용규정 정비(안 제3조의4제4항)
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상 경력계산 기준일,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, 추가

합격자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원활히 운영
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1. 15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1항제3호 중 “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”을 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0조제2항·제3항”을 “제27조제4항, 제29조제6항, 제30조제2항·제3항·제4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포함한다) 및 정책보좌관”을 “포함한다), 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담당 직무 및 직위가 유사하거나 근무기간”을 “근무기간”으로,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”을 “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조의4제1항 및 제4항, 제6조제2항

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, 제30조제2항·제3항,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,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근무상한연령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.

1. 비서, 비서관(「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) 및 정책보좌관

2. 제1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담당 직무 및 직위가 유사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

④ -----

----- 제27조제4항, 제29조제6항, 제30조제2항·제3항·제4항-----

-----.

제6조(근무상한연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포함한다), 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

2. 근무기간-----

-----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

<u>직공무원</u> 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5